

-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7월 5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7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7월 14일

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강대홍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현행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조항이 지나친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하여, 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,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권리 신장을 도모하고,
- 일부 중복되거나 부적합한 문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문을 삽입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, 정비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부칙 제4조(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)의 내용과 상충
 - 제42조(지역안에서의 용적율)제2항 삭제
-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양하고, 소규모 택지를 소유한 시민이 건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
 - 제49조(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높이기준)

○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조문의 수정 및 삽입으로 미비점 보완

• 부칙 제4조(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)

라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: 도시계획법,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이 개정조례는 현행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 중복되거나 미비한 규정을 개선·보완하고, 중심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 것으로서,
-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상으로 짓도록 한 현행 규정(도시계획조례 제49조제1항)이, 개정전 구미시건축조례 제38조 규정(4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)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함으로써, 합리성을 벗어난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규제의 완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- 참고로 중심미관지구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하여 의회 인터넷 공시결과, 참여시민 다수가 행위제한 규정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, 경북도내 경산시 경주시를 제외한 7개시가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를 2층 ~ 5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조례 제42조제2항의 삭제와 부칙 제4조의 조문 수정 및 삽입은 조례의 내용 중복을 배제하고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과 부합되게 조문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기타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